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장봉 빨래방 건립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1243-1 외 1필지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마. 공사내용 및 공사에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빨래방 건축 및 기계설비 1식	착공일부터 90일	129,730,000	12,973,000	7,596,000	-	150,299,000

바. 기초금액 : 금142,70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29,730,000	100%

2. 견적제출 및 견적제출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 출 기 간 : 2026. 7.14.(화) 21:00 ~ 2026. 7.21.(화) 10:00

다. 집행(개찰) : 2026. 7.21.(화) 11:00, 웅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나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899-231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웅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웅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웅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505,665	459,907	1,989,404	2,454,133	963,290	-	-	7,372,399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 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를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 라. 위 ‘가’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 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 및 보호

- 가. 「웅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웅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웅진군 청렴시책을 위한 『청렴QR코드』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 나. 『청렴QR코드』 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웅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웅진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899-231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14.

웅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음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